

#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987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8. 29.

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29.

다. 상정·의결일자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재무과장 오은겸)

#### 가. 제안이유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결을 받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##### 1) 출연 이유
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 및 지방세법 개정 관련 연구,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, 불복소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임
  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0/10,000을 출연
- ※ 연구원 혁신방안 후속조치로 출연비율 인하(1.2 → 1.0) / 하반기 시행령 개정 예정

## 2) 출연 내역

- 출연대상기관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연시기: 2026. 3. 31.까지
- 2026년도 출연금액: 5,132천 원
  - ※ 산출내역: 51,320,655천 원  $\times$  1.0/10,000 = 5,132천 원
- 2025년도 출연금액: 5,906천 원(산출비율 1.2/10,000)

## 3) 기대효과

-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세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지방세정 발전

## 4) 참고사항

### 가) 관계법령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18조

### 나)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### 다) 합의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) 기타

- 입법예고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음
  -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며

- 2026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51,320,655천 원의 1만분의 1 비율에 해당하는 5,132천 원입니다.

※ 산출내역:  $51,320,655,000\text{원} \times 1.0/10,000 = 5,132,000\text{원}$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제1항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